

의안번호	2201923
의 퇴 인	박정 의원
회 답 일	2024. 8. 9.
추 계 번호	24F207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중소기업의 해외특허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1조 신설 (중소기업 해외 특허비용에 대한 세액공제)	○ 중소기업의 해외 특허권, 실용신안권 출원·등록 관련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－ 대상비용: 출원료, 심사청구료, 대리인 수입료 등 － 세액공제율: 25%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1조 신설 (중소기업 해외 특허비용에 대한 세액공제)	○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호 －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동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해외에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출원 또는 등록할 때 발생하는 출원료, 심사청구료, 대리인 수입료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, 안에 따를 경우 법인세 등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
-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출원·등록하는 해외특허 및 실용신안권 건수를 전망하고 출원·등록의 단계마다 발생하는 비용 규모를 파악해야 하지만,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의 생성 시점이 오래되어 이를 근거로 합리적으로 세수효과를 추정하기 어려움

- 특허청에 문의한 결과, 개별기업의 해외특허 출원·등록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답변받음
 - 참고로 과거 특허청은 자체조사를 통해 기업규모별 해외특허 출원건수를 다음과 같이 조사한 바 있으나, 조사시점이 지나치게 오래되어 이를 참고하기 곤란함

[표 1] 해외특허 출원건수: 2013~2015년

(단위: 건)

	2013	2014	2015
대기업	26,037	25,413	25,748
중견기업	2,731	2,625	2,912
중소기업 ¹⁾	5,455	5,538	5,614

주: 1) 중소기업, 공기업, 내국법인, 내국개인 등을 포함

자료: 특허청, 「2019년 조세지출건의서」

- 또한 2019년 해외출원 지원사업 참여 변리업체 조사결과에서는 해외 특허권 출원·심사·등록비용을 다음과 같이 조사하여 제시하고 있으나, 대상 기업이 협소하여 해당 자료를 활용하기 곤란함

[표 2] 해외 특허권 출원·심사·등록 비용

(단위: 만원)

	PCT출원 ^{주)}	개별국 출원	심사비	등록비
평균비용	365	681	250	331

주: PCT 출원은 특허협력조약(Patent Cooperation Treaty)에 의해 동맹국에 동시에 특허출원 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며, 개별국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때 개별국 출원시와 동일한 비용 추가 발생
자료: 특허청, 해외출원 지원사업 참여 변리업체 조사결과(2019)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해외특허 및 실용신안권 출원·등록 규모 및 관련 비용을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어려우므로, 개정안에 대한 세수효과를 추정할 수 없음

III. 부대의견

-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이정훈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정훈	02-6788-4837	nororand@assembly.go.kr